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6. 21. 주호영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6. 24.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4.9.5.)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13.)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2025.12.3.)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2025.12.3.)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제안설명: 주호영의원)

현행법은 간첩행위를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자로, 범위는 ‘군사상의 기밀’로 한하고 있음.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과 포괄적 안보 개념이 대두되면서 과거와 달리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간첩행위 역시 국가기밀에 국한되지 않고 갈수록 광범위해지는 양상임.

간첩의 양상이 변모함에 따라 국익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간첩죄의 적용범위를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외국, 외국인, 외국인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국가의 외적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을 위한 간첩도 성립되고, 이 때 외국인에는 외국법인도 포함되는 등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바, 현행 간첩죄와 병렬적으로 정하여 처벌하기에는 죄형균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¹⁾을 고려하여 처벌대상인 간첩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

1) 제21대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외국 또는 외국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이나 산업기밀 등을 탐지·수집·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이 되나, 외국인을 포함하여 간첩죄와 병렬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2023. 3. 22. 제404회국회 제1차 법제사법소위원회 회의록 p.47)

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법정형에 있어서, 현행 적국을 위한 간첩죄(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보다 낮게(5년 이상의 징역) 설정하고 있음. 이는 외국을 위한 간첩의 경우 그 불법성이나 국익침해의 정도에서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한편,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신설할 경우, ‘외환의 죄’ 장이 아닌 별도의 장에 가칭 ‘외국을 위한 국가기밀침해죄’ 장을 신설하는 등의 입법방식이나, 현행 ‘외환의 죄’ 장 제102조 및 제104조에서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는 개정안 조문을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형법 제2장(외환의 죄)와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유상범위원) 군 방첩부대의 블랙요원 정보가 중국 국적 조선족에게 유출된 사건으로 국가안보에 위기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이 불가능하고 상대적으로 경한 범죄로밖에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박지원위원) 산업스파이·해킹 등으로 인한 국가 핵심기술 유출 위험이 크고, 적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가 우리의 기술 및 산업 정보를 해킹·탈취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미국처럼 우방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

에 대하여 기술스파이 행위 등에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만이 아니라 ‘모든 외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장동혁위원) 우리 헌법 및 대법원 판례상 북한은 반국가단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간첩죄의 대상에 반국가단체를 포함시켜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장경태위원) 간첩죄 개정으로 그 대상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 등 국가로 확대될 것이므로, 형법 개정에 따른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함.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김용민위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